

아세안 국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계획

I 목 적

-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MOLISA)로부터 아세안 국가의 ILO협약(C.187,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증진') 이행을 위한 국제워크숍 패널 참석 요청
-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등 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합의 도출 경험을 공유하여 아세안 국가의 사회적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II 출장 개요

- 출장일자 : '19. 4. 22(월) ~ 25(목)
- 참가행사 : 아세안 국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 주최기관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산업안전보건협의체(ASEAN-OSHNET), 국제노동기구(ILO)
- 출 장 지 : 베트남 닌빈 주(州)
- 출 장 자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신인재 교육원장, 박동언 팀장

III 중점 수행 사항

- 한국의 사회적 협의기구 운영 경험 및 성과 주제발표
- 아세안 국가 사회적 대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 패널 참석
- 베트남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센터(OSHTC) 운영현황 점검 및 협력사업 협의

IV 세부 일정

일 시	수 행 사 항
4. 22(월)	○ 이 동 (인천 → 베트남 하노이 → 닌빈)
4. 23(화)	○ 베트남 산업안전보건훈련센터(OSHTC) 운영현황 점검 및 협력사업 협의 ○ 국제워크숍 초청 패널 사전미팅 실시
4. 24(수)	○ 노·사·정 대화 운영활성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참석(1일차) - 한국의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경험 소개 및 토론패널 참석
4. 25(목)	○ 노·사·정 대화 운영활성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참석(2일차) ○ 이 동 (닌빈 → 하노이 → 인천)

V 세부 수행사항

☐ 베트남 산업안전보건훈련센터 운영현황 점검 및 협력사업 발굴 협의

○ 일 시 : '19. 4. 23(화) 13:00 ~ 15:00

○ 주요내용

- KOICA 협력사업 일환으로 완공된 교육훈련센터(OSHTC)의 운영 현황 및 성과 점검
- 교육훈련센터(OSHT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사업 협의 등

☐ 사회적 대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참석

○ 일 시 : '19. 4. 24(수) ~ 25(목)

○ 장 소 : 베트남 닌빈 Hidden Charm Resort

○ 주요내용

- 노·사·정 위원회 및 노·사 협의체 등 국내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현황 및 성과 주제발표
-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질의응답

- '19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참석' 사업으로 실시
- 행사장 지정숙소 이용으로 여비규칙 제16조1항에 의거 상한액의 1/2범위 내 추가 지급
 - ※ 일비, 식비, 숙박비는 여비규칙 제23조에 의거 행사 및 회의참여 등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행한 상급자에게 지급하는 해당금액 지급 및 적용
-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 국내운임(근무지 → 인천공항)은 출장자의 소속기관 국내여비로 처리
-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절차 준수

【덧붙임】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제출**
 -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신고서 제출)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
 -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관**
 -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이관)

고용노동부장관

- 이관 받은 선물을 인사혁신처로 재이관

↓ (재이관)

인사혁신처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